



도민이 중심
신뢰받는 의회

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5. 4. 22.(화) 10:00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성대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: 2025년 4월 11일

○ 회부일자: 2025년 4월 14일

3. 제안이유

○ 본 개정조례안은 교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급학교의 행사 추진 및 국민의 생명 보호 등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 시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개정함

4. 주요내용

가. 사용료의 면제 대상 확대(안 제6조제1항)

－ 본청 및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

→ 각급학교 추가

－ 국가 및 지자체가 수난구조훈련을 위하여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

→ 면제 신설

나. 수영장 철거에 따른 관리기관 및 사용료 삭제(안 제6조제2항, 별표 6)

－ 수영장 관리기관 삭제

－ [별표 6] 학생, 일반의 징수금액 삭제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이유 검토

-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시 본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과 동일하게 각급학교의 사용료를 면제하고,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 시 사용료를 면제하며 수영장 철거로 인한 관리기관 삭제를 위해 개정함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6조제1항제2호 사용료 면제대상을 ‘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’에 ‘각급학교’를 추가함
 - － ‘각급학교’ 사용료 면제는 교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,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- 안 제6조제1항제6호 ‘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난구조훈련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’를 신설함
 - － 사용료 면제의 경우에 ‘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난구조훈련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’를 신설하는 것은 수난구조를 위한 훈련 시 공무원 개인 부담을 없애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으로 사용료 면제는 타당하다고 사료됨
- 안 제6조제1항제2호 ‘제천학생회관’을 삭제하여 별표6의 제천학생회관 수영장 사용 징수금액을 삭제함
 - － 2020년 제천교육지원청과 제천학생회관 상호 이전 재배치로 현재 제천교육지원청 부지 내 실외수영장이 2019년 이후 미운영 중이며 철거가 예정되어 관리기관 및 사용료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급학교의 행사 추진에 있어 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사용료를 면제, 국가 및 지자체의 수난구조훈련의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 시 사용료를 면제하고, 제천학생회관 수영장 철거로 관리기관 및 사용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- 또한, 「법령 입안 및 심사 기준」 과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비추어 볼 때,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개정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고,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와 방법을 준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적절한 입법 조치라 판단됨
- 다만, 수난구조훈련 시 사용료 면제를 신설함으로 훈련장비로 인한 시설 파손 등 보수비용이 발생할 경우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의 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